

[사회조사과]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호남지방데이터청에서는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6. 8. 5.
호남지방데이터청장

1.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

근무장소	모집구분	모집인원	계약방법	채용기간	수당	비고
사회조사과	기간제근로자 (통계조사원)	1명	근로계약	'26.8.18. ~ '26.10.31.	75,080원	인력 수급 여건에 따라 채용기간 변경 될 수 있음

※ 호남지방데이터청: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

2. 담당업무

담당업무	주요 담당업무
통계조사	- 호남지방데이터청 관할지역내 현지 조사업무 수행 - 광주,나주,영광,함평,장성,화순,곡성,담양 - 가구부문 경상조사(경제활동인구조사, 가계동향조사 등) 조사표 정리 및 표본대상처 관리 지원

3. 근로조건 및 보수

☐ 근무시간 및 형태: 주 5일제(40시간), 1일 8시간(9시~18시) 근무

☐ 보수

○ 일급: 75,080원

○ 기타: 법정수당(정액급식비 140천원, 표본관리비 200천원,

명절휴가비(설날/추석) 기본급 60%(대체기간제의 경우 공무원 1호봉 기준)

4. 채용(모집)방법

☐ 1차 서류전형

○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

<채용인원에 따른 서류전형 선발인원>

채용인원(분야별)	서류전형 선발인원
1명	5 배수

☐ 2차 면접전형(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
○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,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

☐ 전형별 점수 기준 (2025. 5. 1. 기준 적용)

(1차) 서류전형(100점)			(2차) 면접전형
경력, 자기소개서 등	자격증	기타점수	면접
90	5	5	100

☐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

○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

○ 면접(2차)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

○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·의결에 따른 채용 계획에 따라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

☐ 국가유공자 등(취업지원 대상자) 가점

○ 1차, 2차 전형에 각각 적용(최대 10점)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 및 제31조,
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「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5조,

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 부여

5점	10점
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 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- 애국지사의 가족,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,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	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 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-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,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 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,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

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 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	- 전물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- 전물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 - 5·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
---	--

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제24조 및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 부여

5점	10점
-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-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-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-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	-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-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-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※ 국가유공자법 제31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(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(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기타 가점 (1차 전형에 반영)

○ 자격증 점수(최대 5점)

자격증	점수
- 사회조사분석사 1급, 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전자계산기기사, 정보보안기사	5
- 사회조사분석사 2급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정보보안산업기사, 컴퓨터 활용능력1급, 전산회계운용사 1급	3
- 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, 전자계산기기능사, 전산회계운용사 23급, 컴퓨터활용능력 2급, 워드프로세서	1

○ 기타점수(최대 5점)

항 목	점 수	내 용	비 고
저소득층	2	- 기초생활수급자 - 차 상 위 계 층 - 한부모가족 세대주 ※ 관련 증빙서류 제출	※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합계 최대점수는 5점까지 부여가능
다자녀	2	- 다자녀(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2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) ※ 주민등록등본 제출	
북한이탈주민	2	- 북한이탈주민 ※ 북한이탈주민 확인서	
장애인	3	- 장애인등록증 소지자	

5. 응시 자격요건(모두충족)

- ☐ 전산처리 등 해당업무의 수행이 원활한 자
- ☐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- ☐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
- ☐ 최근 3년간 국가데이터처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
- ☐ 최근 2년간 국가데이터처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
- ☐ 채용서류 미비나 거짓 작성하지 않은 자
- ☐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
- ☐ 「통계청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(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(「국가공무원법 제33조」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), 기타 관련법령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
- ☐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

6. 전형일정

- ☐ 채용공고: 2026. 8. 5.(수) ~ 2026. 8. 10.(월) 18:00
- ☐ 서류전형: 2026. 8. 12.(수)
- 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2026. 8. 12.(수) 15:00 이후
- ☐ 면접일시: 2026. 8. 14.(금) 10:00부터,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1층 교육실2 (예정)
- ☐ 최종합격자 발표: 2026. 8. 14.(금) 15:00 이후

※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(<http://mods.go.kr>) 공지사항에 공고

7. 지원서 접수

- ☐ 접수기간: 2026. 8. 5.(수) ~ 2026. 8. 10.(월) 18:00까지
- ☐ 접수방법: 방문
 - 방문접수는 평일 09:00~18:00 내에 접수가능
 - 접수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서류전형 점수에 반영되지 않음
 - 접수장소: 아래 참조

담당자	주 소	전화번호, e-mail
이진희	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1층 고객지원실	062-370-6115

※ 응시원서 등 제출 후,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8. 제출서류

- ☐ 응시원서 1부(필수, 붙임1)
- ☐ 자기소개서 1부(필수, 붙임2)
- ☐ 주민등록 등본 1부(필수,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생략가능)
- 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 이용 시)
- ☐ 개인정보제공동의서(필수, 붙임4)
- ☐ 취업제한관련 체크리스트(필수, 붙임5)

- 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(필수)
- ☐ 자격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☐ 운전면허증 1부(해당자에 한함)
- ☐ 표창 내역 1부(해당자에 한함)
- ☐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☐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탈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(장애인증명서,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기술자격증,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)제외
- ※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, 반환 청구시에는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반환(단, 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)
 - 채용서류(응시원서, 자격증명서, 기타 증명서류) 반환: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 합격자 공고일(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)로부터 15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고, 20일간 신청을 받음
- ※ 청구기간: 2026년 8월 28일 ~ 2026년 9월 16일

9. 유의사항

- ☐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☐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
- ☐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
- ☐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관련 심의기관의 심의·결정을 거쳐 합격이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
- ☐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
- ☐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 조치 실시

【붙임2】

국가데이터처 기간제근로자 자기소개서 (A4 1장 이내 작성)

※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, 개인 신상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문구 자제(출신학교, 출생지, 친인척 관계 등)

직 종	결원대체 기간제 근로자(통계조사원)	지원부서	호남지방데이터청 사회조사과	응시번호	공란
【자기소개】 - 작성방법) 지원동기, 본인의 장단점, 목표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, 개인 신상(출신 학교, 출생지, 친인척 관계 등)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면 안됨					
【직무수행 역량】 - 작성방법) 업무경험(경력) 및 직무관련 활동 등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1. 업무에 필요한 경험, 경력, 또는 관련 지식 등 2. 통계조사 수행, 문제 해결 능력, 적극적인 자세 등 3. 공무수행원으로서의 윤리의식 등을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					
성 명: (서명)					

【붙임3】 (해당자만 제출)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호남지방데이터청
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근로자 채용 및 관리
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이용 대상	행정정보명	이용 대상	행정정보명
☐	국가기술자격증(대한상공회의소)	☐	장애인증명서
☐	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	☐	주민등록표 등본 (다자녀 양육자 포함)
☐	국가유공자(유족)/5·18민주유공자 (유족)확인서	☐	취업지원대상자증명
☐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	☐	한부모가족증명서

* 이용 대상 행정정보명에 체크(☑)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「개인정보 보호법」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

주민등록번호	-
--------	---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26년 월 일

대상자 본인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전화번호 :

[illegible]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공직자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류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	해당 ☐ 비해당 ☐
2. ‘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혹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몰실성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공횡령, 공물을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	해당 ☐ 비해당 ☐
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	해당 ☐ 비해당 ☐
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	해당 ☐ 비해당 ☐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	해당 ☐ 비해당 ☐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	해당 ☐ 비해당 ☐
4-3. 권익위법(‘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’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	해당 ☐ 비해당 ☐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	해당 ☐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	해당 ☐

2026년 월 일
생년월일 . . 지 원 자 (서명)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경우 기재)	다른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호남지방데이터청장 귀하

공지사항
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 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2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3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